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3월 11일

권유자: 성명: 아스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145, 11층
전화번호: 031-893-0375

작성자: 성명: 정한영
부서 및 직위: 운영2팀 과장
전화번호: 031-893-040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아스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03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03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03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승인			
<input type="checkbox"/> 이사의선임			
<input type="checkbox"/>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nput type="checkbox"/>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아스타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응준	최대주주	보통주	3,033,167	20.34	최대주주	-
김양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처)	보통주	2,094,037	14.04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처)	-
조응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제)	보통주	8,108	0.0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제)	-
박철우	사외이사	보통주	52,893	0.35	사외이사	-
박종완	사내이사	보통주	48,894	0.33	사내이사	-
김상일	사외이사	보통주	0	0	사외이사	-
계	-	-	5,237,099	35.1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종완	보통주	48,894	사내이사	사내이사	-
정한영	보통주	45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3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03.16 ~ 2026.03.25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아스타	http://www.astams.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전자위임장: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이용
2. 서면위임장:
접수처 : (우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1층(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접수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26년 03월 26일 오전 9시
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층 컨퍼런스룸 2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6.03.16 ~ 2026.03.25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은 3,034 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으며, 영업손실은 전년도 -4,018백만원에서 당해년도 -2,555백만원으로 36.4% 개선되었으며 당기 순손실은 전년도 -3,864백만원에서 당해년도 -3,371백만원으로 12.7% 개선되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산 추정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제출될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20(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19(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20(당)기말		제19(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14,491,153,876		6,461,013,696
현금및현금성자산	2,906,053,464		21,318,05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20,656,540		1,943,484,014	
기타유동금융자산	5,905,543,981		2,211,903,596	
재고자산	2,349,674,360		2,043,299,780	

과목	제20(당)기말		제19(전)기말	
기타유동자산	790,245,411		229,420,354	
당기법인세자산	18,980,120		11,587,900	
비유동자산		1,076,878,320		2,098,786,304
장기금융상품	40,000,000		20,000,00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774,950		1,774,950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2,006,039		63,989,63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83,948,223		387,859,067	
유형자산	81,043,895		192,503,596	
사용권자산	348,332,417		859,864,257	
무형자산	399,772,796		572,794,799	
자산총계		15,568,032,196		8,559,800,000
부채				
유동부채		3,554,814,795		1,787,027,884
매입채무	51,715,400		5,435,100	
기타유동금융부채	749,308,342		419,297,053	
차입금 및 사채	2,424,445,745		889,581,365	
기타유동부채	100,098,359		34,859,988	
유동리스부채	229,246,949		437,854,378	
비유동부채		2,755,683,267		2,624,943,969
확정급여부채	2,511,796,012		2,044,732,221	
총당부채	90,627,897		109,527,594	
비유동리스부채	153,259,358		470,684,154	
부채총계		6,310,498,062		4,411,971,853
자본				
자본금		7,590,650,000		6,783,650,000
주식발행초과금		49,434,080,635		42,588,673,089
이익잉여금(결손금)		(50,275,179,520)		(47,004,858,526)
기타자본항목		2,507,983,019		1,780,363,584
자본총계		9,257,534,134		4,147,828,147
부채와자본총계		15,568,032,196		8,559,800,00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20(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9(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과목	제20(당)기		제19(당)기	
매출액		3,034,819,140		3,354,706,693
매출원가		1,744,360,638		2,396,847,457
매출총이익		1,290,458,502		957,859,236
판매비와관리비	3,847,021,734		4,976,583,852	
영업이익(손실)		(2,556,563,232)		(4,018,724,616)
금융수익	227,497,631		189,101,531	
금융원가	849,555,639		214,217,597	
기타수익	60,863,122		180,721,842	
기타비용	255,243,893		677,9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373,002,011)		(3,863,796,752)
법인세비용(수익)		(102,681,017)		-
당기순이익(손실)		(3,270,320,994)		(3,863,796,752)
기타포괄이익		(103,163,335)		(160,265,45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03,163,335)		(160,265,459)
총포괄이익(손실)		(3,373,484,329)		(4,024,062,211)
주당이익(손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231)		(28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0(당)기 처리예정일 2026년 03월 26일

제19(전기) 처리확정일 2025년 03월 27일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처리예정일 2026년 3월 26일)		(처리확정일 2025년 3월 27일)	
I. 미처리결손금		(50,275,179,520)		(47,004,858,526)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47,004,858,526)		(43,141,061,774)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처리예정일 2026년 3월 26일)		(처리확정일 2025년 3월 27일)	
당기순손실	(3,270,320,994)		(3,863,796,752)	
Ⅱ. 결손금처리액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275,179,520)		(47,004,858,52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효근	1963.10.12	-	-	-	이사회
임관훈	1982.03.15	-	-	-	이사회
김병수	1979.09.23	-	-	-	이사회
김재석	1968.06.01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효근	-	2000~2010	(주)에스디 (현, (주)한국애보트진단) 혈당사업부 총괄, 부사장	-
		2010 ~ 현재	(주)에스디바이오센서 대표이사 / 부회장	
임관훈	-	2010 ~ 2015	바이오니아 선임연구원	-
		2015 ~ 현재	(주)에스디바이오센서 증평공장장	
김병수	-	2015 ~ 2022	(주)SK	-
		2022 ~ 현재	(주)에스디바이오센서 미래전략실 이사	
김재석	-	2002 ~ 현재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효근	부	부	무
임관훈	부	부	무
김병수	부	부	무
김재석	부	부	무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
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
할 수 있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
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사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기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안·사
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여 인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26년 2월 25일

후보자: 이효근 (서명 또는 날인)

주식회사 아스타 귀중

SDC아이오센서 ASA인력부 김경수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이효근)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
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
할 수 있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
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
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26년 2월 25일

후보자: 임관훈 (서명 또는 날인)

주식회사 아스타 귀중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임관훈)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
목부터 미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기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
할 수 있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경력·생년월일·주요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
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
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26년 2월 25일

후보자: 김 병수 (서명 또는 날인)

주식회사 아스타 귀중

중도리이코엔씨 주식회실편부 김병수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김병수)

[양식]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사외이사 후보자용)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아스타 귀중

본인은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제2항 등^{주1)}에 따른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귀 사 외에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회사^{주2)}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른 회사의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 재임 사항

순번	회사명	직책	임기(시작일 ~ 종료일)
	해랑인력		
	''		
	''		

2026년 2월 25일

사외이사 후보자

김재석

(서명 또는 날인)

주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의미함

주2) 비상장회사 포함

※ 제출방법 : 사외이사 선임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 시점에, 상장법인이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증시 침부시유도 제출

※ 작성시 주의사항 : 별지(상장법인 사외이사의 적격요건 체크리스트) 각 항목에 '취함' 또는 '미취함'에 표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김재석)_001

[별지]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 다음 법령 중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을 선택하고, 결격요건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에 '○' 표시하여 제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인정됨(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7)

1. 「상법」 적용 대상 법인인 경우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여부
I. 상법 제332조의제3항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미해당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미해당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미해당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미해당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미해당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미해당
⑦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미해당
II. 상법 제542조의8제2항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해당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미해당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해당
④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해당
⑤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견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동일명령으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미해당
⑥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견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미해당
⑦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자	미해당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행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p>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 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p> <p>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 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사 봉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 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p> <p>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p> <p>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 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p> <p>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p> <p>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 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p> <p>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 사에서 각각 재직할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p>
<p>III. 상법 제542조의8제5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추천받음(○), 적용대상 아님()</p>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법인인 경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해당여부
I.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해당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미해당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해당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미해당
⑤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해당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어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미해당
⑦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문보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해당
⑧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성평가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 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 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 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	미해당

<p>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 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II.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①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미해당
②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미해당
③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미해당
④ 해당 금융회사 임위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미해당
⑤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미해당
⑥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미해당
⑦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미해당
<p>⑧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사지배구조법 제8조제3항)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p> <p>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p> <p>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p>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지회사등 및 자은행</p> <p>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p> <p>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p> <p>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미해당

<p>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p>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p>	
<p>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p>	
<p>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중우기업의 임직원</p>	
<p>III.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추천받은(), 적용대상 아님(○)</p>	
<p>사외이사의 자격요건</p>	
<p>IV.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제3항</p>	
<p>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사람</p>	<p>미해당</p>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55 백만원
최고한도액	5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50,000,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